

장애인 인권이 지켜지는 사회가 모든 사람의 인권도 보장되는 사회



장애인인권지침서

Md.g.5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Md.g.5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인권정보자료실
Md.g.5
**장애인
인권
지침서**

“인권에 대해 배우는것 자체가 권리이다.
무지를 강요하는것, 내버려두는 것은 인권침해이다.
교육은 인권과 자유의 주춧돌이다.”

- 유엔,『인권, 새로운 약속』중에서



표지디자인
일러스트
제작 : 브리지(2269-6946)

장애인인권지침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오로지 장애라는 이유로 당해왔던 불이익과 차별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있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1999년 장애인 인권현장선포 1주년을 기념하여 장애인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여 백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인권실태를 조사하면서 이 땅에서 더 이상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의 인권이 실종되는 일은 1999년으로 마감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리고 새 천년에는 장애가 생활에 불편함 이상이 되지 않고, 장애인에게 또 다른 굴레가 되지 않기를 염원했습니다.

하지만 새천년에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장애인 인권이라는 말을 떠올리기도 무색한 많은 사건들이 벌어져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지역에서, 노동현장에서 장애라는 이유로 불이익과 차별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장애인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와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장애인 인권실태를 조사하여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애인과 그 주변 사람들이 장애인의 인권을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는 권리의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애인 스스로가 권리의식을 갖지 못하는데 누가 대신하여 우리 권리를 보장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2000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는 장애인 자신과 주변에서 장애인인권을 스스로 지켜나간 사례를 조사하여 그것을 일종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신의 인권을 지켜나가는 일에 어떤 정해진 해법이나 정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례 하나하나에 대한 대처방법을 알았을 때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할 수 있을 것이며, 다시는 이런 불이익과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장애인 인권지침서를 마련하는데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직접 사례 조사를 통해 집필해주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인권위원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인권의 기본적인 철학과 이념부분에 자료를 협조해주신 인권운동사랑방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많은 피해자들을 만나 인터뷰를 영상에 담아 인권에 대한 장렬한 경고의식을 심어준 장애우권의문제연구소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인권지침서가 장애인 인권에 있어 지침이가 되어 장애인은 물론이고 전국민이 장애인 인권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2000. 11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회장 안 세 준



차례



장애인 인권지침서

발간사

제1부 인권마당(인권교육길잡이)

| | |
|-----------------|----|
| 제1장 인권의 정의 | 8 |
| 제2장 인권의 역사 | 13 |
| 제3장 인권의 내용 | 20 |
| 제4장 인권이 추구하는 가치 | 30 |
| 제5장 인권지킴이 | 35 |
| 제6장 인권을 위한 행동 | 38 |



제2부 장애인 인권마당

| | |
|-----------------------|-----|
| 제1장 기회의 평등, 결과의 평등 | 42 |
| 제2장 접근권행사에 있어서 장애인 차별 | 64 |
| 제3장 고용현장에서의 차별 | 73 |
| 제4장 소비자로서의 장애인의 권리 | 82 |
| 제4장 폭력으로부터의 장애인 인권유린 | 101 |

제3부 부록

| | |
|---------------------|-----|
| 인권교육 활동 | 114 |
| 인권 119 | 133 |
| 언론을 통해 본 2000 장애인인권 | 145 |
| 인권헌장 | 180 |

1부 인권마당



- 제1장 인권의 정의
- 제2장 인권의 역사
- 제3장 인권의 내용
- 제4장 인권이 추구하는 가치
- 제5장 인권지킴이
- 제6장 인권을 위한 행동

인권의 정의

인권의 출발점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집안 형편이나 성적 때문에 무시 받고 함부로 취급당할 때면 아주 속상합니다. 그럴 땐 이렇게 소리치고 싶죠.

“날 함부로 다루지 마세요. 나도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어요. 나도 알고 보면 귀하신 몸이라구요!”

하지만 “뭐야? 어린것이 못하는 말이 없어! 공부나 잘하면 몰라.” 이런 소리가 금방 날아올 것 같아 사실 입도 병긋 못할 때가 많죠. 그래도 속에서 솟아나는 생각을 억누를 수는 없었죠. ‘소중하게 다뤄지고 대접받고 싶다’는 생각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중하게 다뤄지고 대접받고 싶어하지, 경멸받고 차별받기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로운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힘에 의해서도 빼앗길 수 없는 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럴 땐 어떤가요? 부모님의 실직 때문에 곤란을 겪거나 왕따가 된 친구를 볼 때,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소외 받고 힘든 삶을 사는 사람을 목격할 때면 괜히 우울해지진 않나요?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사람인데…….”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은 참으로 소중 합니다. 모든 사람은 똑같이 귀하게 대접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바로 인권의 출발점이니까요.

이렇게 간단한 걸 깨닫기까지 인류는 정말 긴 세월을 써왔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자기 뜻대로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권력자들은 자기에

게만 좋은 쪽으로 세상을 유지하고 싶어했으니까요. 돈과 권력을 가진 소수가 누리는 권리가 나머지 다수의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들만의 ‘특권’ 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노예니까, 너는 노동자니까, 너는 여자니까, 너는 아이니까, 너는 외국인니까’ 하는 식으로 고리표를 붙이고 “너는 권리의 주인이 될 수 없어, 권리란 나 같은 신분의 사람만이 갖는 거야”라고 큰소리치는 세상이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자유로운 정신과 신체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말도 안되는 특권과 차별을 그냥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그 특권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러한 도전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폭력과 고문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도 했으며, 자기 나라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은 사람들은 권리 을 상대로 하여 “이러이러한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하는 인권으로 하자”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물론 그런 약속은 말과 시늉에 그칠 때가 많았지만, 모든 사람이 골고루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가진 인권을 만들려는 노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권은 이런 과정 속에서 만들어졌고 지금도 새로운 인권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투표에 참여하게 된 것은 불과 100년도 안된 일입니다. 오늘날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말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라는 생각은 최근에야 생겨난 생각입니다. 이렇듯 인권은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라 늘 변하고,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한마디로 규정하기가 힘듭니다. 인권은 시대와 사회적 조건에 따라 늘 변화되고 풍부해지는 역동적인 개념이니까요.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가 인권이라는 생각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권의 성격

인권을 바라보는 관점은 사람들이 처한 처지에 따라 서로 다릅니다. 사용자와 노동자, 남성과 여성, 어른과 어린이 등 권력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인권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인권이 만들어지고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대개가 동의하는 다음과 같은 인권의 성격이 존재합니다.

인권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이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신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는 말이지요. 인권에는 이런 말이 통할 수 없습니다. 인권은 인간다움을 지키기 위한 최저선 또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이나 ‘필수’라는 말에는 거기서부터 다른 모든 것이 출발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과는 구분하여 인권을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로 얘기합니다. 인간이 그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인간답다’고 할 수 없는 선을 인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권은 보편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곳에서나 모든 사람이 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에 따라 좋고 나쁨이 달라지고 다르게 취급한다면 인권이라고 부를 수 없으며,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인권은 어떠한 특권에도 반대하는 것으로 “모든 장소의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갖는 권리”입니다. 즉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또는 사상, 출



신, 재산, 출생 또는 그 어떠한 지위에 따른 차별” 없이 누려야 할 권리가 인권입니다. 이러한 인권의 성격을 우리는 ‘보편성’이라 부릅니다.

인권은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국가권력을 제한한다

모든 사람이 차별없이 당연하게 누려야 하는 것이 인권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인권을 억압하는 국가권력은 정당성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국가권력은 권리자 자신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오직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권리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함부로 사용할 가능성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부가 권력을 올바로 사용하고 있는지 판단할 잣대가 필요합니다. 그 잣대가 바로 ‘인권’입니다. 인권의 보장이야말로 권리가 존재하는 목적이자 이유이기 때문에, 국민은 인권을 억압하는 권력에는 언제든지 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권은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판단하며 국가권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인권은 법으로 보장되는 권리 이상의 것이다

우리는 흔히 국내법이나 국제법으로 보장된 권리만 인권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법’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인권보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권리자 자신을 위해 법을 만들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억압하는 법을 우리는 악법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인권은 법에 따라 보장되고 있는 권리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법이 보장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권리라면 인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권에 대한 인류의 약속

이제 ‘인권의 정의’에 대해 인류가 분명히 정리해 둈 문서를 읽어봅시다. 오늘날 ‘인권’은 인류 사회가 맷고 있는 중요한 약속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을 비롯한 각 나라의 헌법과 1948년 유엔에서 세계 각국이 합의한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나라 사이에 맺은 법인 ‘국제인권조약’ 등은 하나같이 인권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인권과 관련된 주요 선언과 조약은 부록에 그 내용을 전부 실었습니다.

「모든 인류는 타고난 존엄성과 평등하고 남에게 넘겨줄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세계의 자유와 정의와 평화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인권에 대한 무시와 멸시는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만행을 저질러왔다. 모든 인류가 최고로 바라는 것은 인간이 언론과 양심의 자유를 누리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세계인권선언’ 머리말, 1948년)

「인류사회의 모든 사람이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존엄성과 평등하고 남에게 넘겨줄 수 없는 권리 는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에서 나오는 것임을 인정한다.」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머리말, 1966년)

「모든 국민은 사람으로서 존엄함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침해할 수 없는 기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0조, 1987년)



인권의 역사

인권은 수많은 이들의 땀과 눈물로 성장

학생의 인권, 여성의 인권,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등 인권이라는 말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인권이란 말은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인권(human right)’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야 인류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게 된 새로운 말입니다.

인권을 알기 전 인류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예전에는 아주 소수의 사람에게만 권리가 보장되었을 뿐,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생각은 인정되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권’이 아닌 소수의 ‘특권’ 만이 보장되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특권이 지배하던 시대에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위험인물로 지목되어 생명을 위협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인권이 어느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 보장되기 시작한 것은 아니겠지요. 인권이 임태되고 성장하는 과정에는 ‘인간다움’을 보장받기 위해 특권에 도전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똑같은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노력했다는 이유만으로 겪어야 했던 갖가지 시련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권의 세상

국왕의 군대가 나타나면 겁에 질려 황급히 몸을 숨기는 백성들, 주인나리의 죄를 대신하여 관청에서 매를 맞아야 하는 노비 등을 훌륭한 영화와 드라마 속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인간이 인간



을 소유하고 억압하는 신분제도 속에서 대다수 인간의 삶은 자신이 섬겨야 하는 소수 특권층의 즐거움과 편한 생활을 위해 희생되어야 했고, 권력에 대한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의 고통 위에서 특권을 누리던 신분 사이에도 갈등은 있었습니다. 국왕의 요구와 간섭이 지나칠 때면 귀족들도 불만을 가지고 반발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힘으로 국왕을 압박하여 자신들이 보장받고 싶은 권리를 '문서'로 만들어 '약속'을 받아내곤 했습니다. 물론 그 문서에서 약속한 권리은 국왕과 귀족들의 것이었지, 그 외의 일반 사람들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문서로 맺은 약속'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문서로 보장된 권리 기준이 없다면 권력을 가진 왕이 언제든지 "이거 해라, 저것 내놔라" 할 수 있고, "내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느냐"며 말을 뒤집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일에 제동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서에 의한 인권 보장의 첫걸음은 영국의 '마그나카르타(대헌장, 1215년)'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그나카르타에는 왕권을 법으로 제한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내용의 대부분은 여전히 신분상 특권층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는 법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모든 인간의 권리로 재해석되고 확대되기 위해서는 신분제로부터의 해방을 비롯한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인권의 탄생 — 근대시민혁명

"우리 인간이 사회를 이루어 살기 전엔 어땠을까?"

"정부 같은 게 존재하지 않는 자연상태에서 생활했지."

"그럼 성문법이나 재판관도 없었겠네?"

"자연상태에서 각 사람은 독립적이고 평등하며 침해할 수 없는 인권을 가진 존재였어. 이런 인간의 본성에 기초하여 이성을 가지고 인식할 수 있는 자연법에 따라 생활했지. 각 사람이 보편 타당한 자연법을 인식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집행했어."

"자연법, 그게 뭔데?"

"이를 테면 신이나 국가가 만들어낸 법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올바른 자연의 질서가 존재한다고 믿은거야.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정의(正義)의 원칙이 곧 자연법이지. 결국 자연법은 인간의 이성이 만들어낸 합리적인 질서를 의미하는 거야."

"그럼, 이성을 상실한 사람의 눈에는 자연법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았을 텐데, 자연법을 어기고 남의 권리를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했지?"

"그게 문제였지. 명확한 법도 없고 그것을 적용하여 집행할 수 있는 힘도 없었어. 그래서 사람

들은 자신의 인권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각 사람의 권력을 모아 공통의 권력을 만들 필요를 느꼈지. 즉 자연법을 문서화(입법)하고 그것을 적용(재판, 집행)할 담당자를 정한 거야."

"그럼, 현실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정부'라고 볼 수 있겠네. 그런데 그 정부가 권력을 잘못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하지?"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독립적이고 평등한 각 사람이 권력을 공출하여 정부를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그 정부가 인권 보장이라는 임무를 저버릴 때는 정부에게 준 권력을 되찾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정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저항권'이 있어."

지금까지의 얘기는 미국의 독립혁명(1776년)과 프랑스혁명(1789년)을 비롯한 '근대시민혁명'이 갖고 있던 인권 이념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대시민혁명의 대표적인 인권 이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인권은 목적이고 권력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는 이념입니다.

1989년 프랑스 인권선언에는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시효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를 보전함에 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국민과 정부의 관계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구체제에서는 오로지 지배를 당하는 입장이었던 국민이 인권의 소유자이자 권리의 원천이 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정치의 목적이며 이 목적을 위해서만 정부와 권리의 존재가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인권 보장이라는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권력을 잘못 사용했을 때는 그 권력의 주인인 국민이 그 권력을 되찾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국민은 정부가 인권 보장의 임무를 저버릴 때는 언제든지 '저항'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둘째로는 인권은 침해할 수 없다는 이념입니다.

인권은 원칙적으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권리이기 때문에 어떤 권리이나 법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불가침성'을 갖게 됩니다. 이에 대해 미국 독립선언에서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며, 남에게 넘겨줄 수 없는 천부의 권리를 일정하게 부여받았다"라고 천명했으며, 프랑스 인권선언에서는 "인간의 자연적이고 남에게 넘겨줄 수 없는 신성한 여러 권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권 이념은 근대시민현법을 통해 보장되기 시작하여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서구사회에 정착됩니다.

근대시민혁명의 씨앗은 15~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 상공업이 발전하면서 봉건

제도의 뿌리가 흔들리게 되고, 재력을 쓸고 지식을 갖춘 시민계급도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 시민계급은 자신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부의 축적을 가로막는 봉건귀족의 간섭이 싫었습니다. 즉, 시민계급은 봉건제적 토지에 얹매여 있는 사람들이 해방되어 자신들의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자유로운 노동력이 필요하였던 것이지요. 물론 봉건적 특권계급의 억압 속에서 비참한 생활을 해야 했던 대중들도 해방을 간절히 원했지요. 그리하여 시민계급과 대중들이 힘을 합쳐 신분제의 억압과 권력의 부당한 간섭에 맞서 '자유'를 얻기 위해 일어난 것이 근대시민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때 시민혁명은 모든 국민을 침해할 수 없는 인권의 소유자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특권과 신분체제를 역사의 장에서 지워버리고 모든 사람을 법 앞에 평등하게 하였습니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모든 국민을 정치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된 것입니다.

근대시민혁명은 특히 재산권과 생명권, 자유권을 절대적인 권리로 간주하였습니다. 구체제에서는 국왕이나 귀족들이 마음대로 사람들의 재산이나 생명을 빼앗곤 했으며, 자기가 가진 사상이나 신앙, 의견 등을 마음대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근대시민혁명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함부로 빼앗기지 않고 계약을 맺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자본주의적 경제체제가 발전하게 되고, 정신활동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과학과 문화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자유와 평등을 위한 투쟁 — 사회권의 등장

근대시민혁명이 가져온 인권 보장 체계에 밝은 면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혁명에 성공한 시민계급은 구시대의 지배계급처럼 자신들의 권리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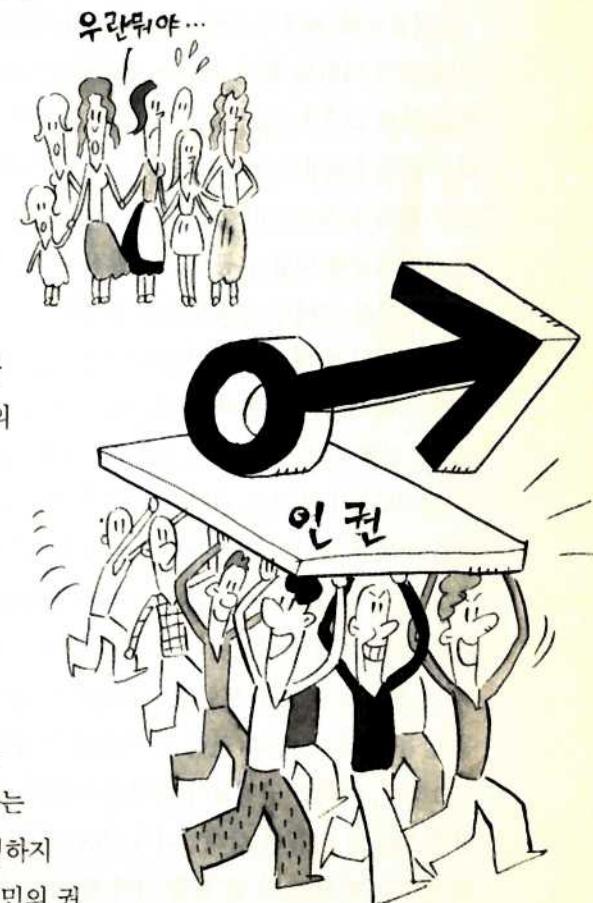
혁명의 구호였던 '자유'와 '평등' 중에서도, 시민계급은 권력의 부당한 간섭과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에 초점을 두고, '평등'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형식적인 선언만 했을 뿐입니다. '자유' 중에서도 시민계급이 절대적으로 옹호한 것은 자신들의 부의 축적과 확대에 도움이 되는 '경제활동의 자유', '계약의 자유' 뿐이었습니다.

시민계급은 "나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노동과 시간을 계약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지만, 그러한 계약은 자본을 가진 시민계급에게 유리한 것이었고 아무 것도 가진 게 없는 노동자들에게는 굽어 죽지 않기 위해 받아 들여야 하는 불리한 조건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구체제에서 신분제도에 매여 있던 대다

수 인민이 이제는 '고용'이라는 계약을 통해 '노동력'을 팔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돼 버렸습니다.

시민계급은 경제활동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옹호하면서 기타의 자유(사상·표현·신체의 자유 등)는 여러 법률로 제한하였으며, 노동자를 선거에 참여시키지 않는 제한선거제도를 유지했습니다. 세금을 낼 수 있을 만큼 재산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선거권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민중의 정치 참여를 막기 위한 장치들이었기 때문에 대다수 민중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들이 인간다운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정부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고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대시민혁명이 보장한 인권은 인류의 절반인 여성은 권리 무능력자로 취급하며 남성과 차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성에게는 여전히 선거권조차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권'이 아닌, 사실상 '남성과 남성 시민의 권리'



리' 만을 보장했던 것입니다.

이런 식의 인권 보장 체계가 가져온 결과는 견디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형편없는 임금과 장시간의 노동은 기본이었고, 아버지가 아무리 일을 해도 입에 풀칠하는 것조차 힘들었기 때문에 어머니와 어린아이들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물론 어머니는 아이와 마찬가지로 미성년자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임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힘든 일과 질병, 화장실도 환기구도 없는 비위생적인 생활환경 속에서 노동자의 평균수명은 저하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힘든 노동뿐 아니라 채찍을 맞는 등의 온갖 학대까지 겪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팔짱을 끈 채, 간섭을 최소화하고 경제활동의 자유만 최대한 보장하기만 하면 사회가 절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민혁명의 성공에 기뻐했던 민중과 양심적 지식인들은 혁명의 구호였던 '자유'와 '평등'이 이렇게 빈 겹데기가 되어 가는 것에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구상을 하게 되었고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경제활동의 자유가 아닌 정신활동과 신체의 자유를 강화하는 것,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를 통해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는 것, 인민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계발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는 것, 압제에 대한 저항권(봉기)을 인정하는 것, 형식적인 대의제가 아닌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 등이 이들의 구상이었습니다. 시민계급과는 다른 의식으로 무장한 이들은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정치에 참여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게 되었고, 그 불을 끄기 위한 지배계급의 억압과 공세는 폭발적인 사회문제와 갈등을 불러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배세력은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다른 한편으론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 지배계급과 자본의 안정적인 발전에도 결코 이롭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배세력은 노동자에게도 일정 정도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 결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들이 '사회권'의 이름으로 인권의 영역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새로운 권리는 국가의 방임이 아니라 일정 기준에 이르기까지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간섭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현대 국가에서는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인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헌법과 제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경제활동의 자유를 정의의 원칙에 알맞게 제한하며, 노동자와 여성을 포함하는 보편적인 참정권을 보장하며, 기본적인 생존을 누릴 권리·교육을 받을 권리·노동의 권리 및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해도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모든 사람이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치가 제 구실을 하려면 인류는 아직도 더 먼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세계인권선언과 인권의 국제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인권 보장 체계를 생각해 봅시다. 21세기를 눈앞에 둔 우리에게 인권은 인류 보편의 언어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인권의 국제화'란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권은 주로 국가권력에 대하여 자유와 해방을 외쳐온 것이었지만, 모든 인류가 누려야 한다는 보편성을 갖고 있으므로 국가와 국경을 넘어서는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인권이 인류 보편의 문제라는 걸 깨우쳐 준 것은 가장 비인간적이고 반인권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특히 나치가 유대인을 600여 만 명이나 학살한 사건은 "국내에서 인권을 무시하는 국가는 언제든지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는 교훈을 인류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이 교훈에 기초하여 1945년 창설된 유엔(국제연합)은 '국제평화 유지'와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인 존중'을 목적으로 내걸었고, 그 첫 작업으로 '세계인권선언(1948년)'을 제정하였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정치, 경제, 문화, 종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민과 모든 국가가 달성해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서 보장해야 할 인권의 내용을 세계 만방에 선포한 것입니다. 세계인권선언 제정 이후에도 유엔은 보편적인 인권의 기준이 되는 '선언·협약·조약'을 많이 만들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기구와 제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는 "인권은 한 나라 내부에서만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관심사항"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평화롭게 살 권리',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재난으로부터 구제받을 권리' 등은 국경을 초월한 전 인류의 단결과 연대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인권들입니다.

인권의 내용

인권은 변화·발전한다

오늘날 대중매체 등을 통해 '인권' 이란 말을 자주 들을 수 있게 되었지만, 인권에 속하는 구체적인 권리들을 대라면 우물쭈물하게 됩니다. 한 친구가 용감하게 손을 들고 "행복추구권이오" 하고 답하고 나면 다시 침묵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권리에 어떤 것이 있는지 잘 알고 있어야 제대로 쟁길 수가 있겠죠. 경기의 규칙을 모르면 가만히 서 있다가도 퇴장 당할 수 있듯이, 권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나의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을 뿐더러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함부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인권'의 항목은 '제2부 인권의 역사'에서 살펴보았듯이 수많은 변화를 거치면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권리는 퇴보하였고, 어떤 권리는 강화되었으며, 어떤 권리는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인권이 변화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새로운 인권침해가 출현하고, 사람들의 대응에 따라 새로운 권리가 또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인권은 고정 불변의 것이 아니라 '역동성'을 갖는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인권의 변화 속에 등장한 권리의 내용은 크게 1·2·3세대 인권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세대'로 표현했다고 해서 순서대로 등장해 앞의 것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보완되고 확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1세대 인권 — 자유권 혹은 시민·정치적 권리

봉건시대를 뒤로하고 근대시민혁명을 통해 등장한 '자유권'은 정치권력의 남용과 오용으로부터 각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막이였습니다. 그래서 자유권은 국가가 개인에게 간섭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성격을 갖습니다. 자유권에 해당하는 권리들은 오늘날 세계인권선언에 포함된 다음

과 같은 권리들로 발전해 왔습니다.

- 차별로부터의 자유(2조)
- 인간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안전에 대한 권리(3조)
- 노예나 기타 자발적이 아닌 예속상태로부터의 자유(4조)
- 고문, 비인간적인 처우 또는 처벌로부터의 자유(5조)
- 자의적인 체포·구금 또는 추방으로부터의 자유(9조)
-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10조)
- 사생활 및 통신에 간섭받지 않을 자유(12조)
- 재산을 소유하고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않을 자유(17조)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18조)
- 의견·표현의 자유(19조)
-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20조)
-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정부에 참여할 권리(21조)등

2세대 인권 — 사회권 혹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근대시민혁명은 '모든 인간의 인권'을 선언하며 인권의 찬란한 신기원을 열었지만,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고치려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 결과 노동자에게 선거는 먼 나라 얘기였고, 여성에 대한 차별은 분명했으며, 저임금·장시간 노동과 아동노동의 현실은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자유'가 의미를 가지려면 '자유'를 통해 인간다운 생존을 추구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자유'를 가지고 뭔가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물질적 토대가 보장돼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투쟁을 통해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리 보장과 노동조건의 개선 등을 비롯한 실질적인 평등을 요구했습니다.

노동자들의 투쟁과 지배세력의 수용을 통해 인권에 새로 등장하게 된 권리들을 '사회권'이라 합니다. 사회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이전 시대의 역할과 달리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분배의 정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 요구되



었습니다. 사회권에 해당하는 권리는 오늘날 세계인권선언에 포함된 다음의 권리들로 발전해 왔습니다.

-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22조)
- 일할 수 있는 권리, 실업으로부터 보호받는 권리 등(23조)
- 유급휴가 등 휴식과 여가를 가질 권리(24조)
- 건강 및 행복에 필요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는 권리(25조)
- 교육을 받을 권리(26조)
-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과학의 혜택을 누릴 권리(27조) 등

3세대 인권 — 집단권 혹은 연대의 권리

앞의 1·2세대의 권리가 국가와 개인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각 개인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면, 3세대 인권은 집단의 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권의 역사를 살펴보며 느꼈겠지만 인권의 성립과 발전에는 서구 사회가 중심역할을 했고, 오늘날의 인권에는 서구 사회의 인권관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 사회가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루고 인권 보장 체계를 세우는 동안 인류 구성원의 상당수가 속해 있는 제3세계는 철저히 소외되어 왔습니다. 또한 서구의 발전은 제3세계의 회생을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독립 국가를 이루고 있지만 제3세계의 많은 민족과 국가들은 강대국의 식민지였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식민지 경험에 더해 아프리카 사람들은 3백년 이상의 노예 상태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제3세계의 대다수 민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억압과 착취를 경험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까지도 심각한 빈곤과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빼앗긴 세월을 되찾고 인간다운 생존을 보장받기 위하여 제3세계 민중은 권력과 자원, 부 그리고 기타 중요한 가치의 세계적인 재분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많은 인권 문제들은 한 나라나 개별 국가의 힘만으로 대처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평화롭게 살 권리,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재난으로부터 구제받을 권리' 등은 국경을 초월한 단결과 연대를 필요로 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제3세대 인권을 '집단권' 혹은 '연대의 권리'라고 부릅니다.

- 자결권: 자신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경제·사회·문화의 발전을 자유로

이 추구할 수 있는 권리

- 천연재화와 자원을 자신들을 위해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
- 지구와 우주자원·과학·기술·기타 정보의 발전 결과, 문화적인 전통·유적·기념물 등 의 인류 공동의 유산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

인권은 나눌 수 없는 전체적인 권리

지금까지 살펴본 1·2·3세대 인권에 대한 완전한 합의는 아직 없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자유권을 중시하고 사회권을 소홀히 취급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가령,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사회권은 권리가 아니라 산타클로스나 줄 수 있는 선물이다.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허나 어느 나라나 이용할 수 있는 자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사회권의 보장을 책임질 수 없다. 따라서 사회권의 실현은 사람들의 소망이라 말할 수는 있어도 권리가 될 수는 없다."

또한 자유권 중에서도 경제활동의 자유, 사적 재산의 소유에 애착을 갖는 사람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인권은 개인적인 것이다. 개인이 사적으로 소유한 재산에 대하여 국가가 사회정의에 입각해 재분배를 하겠다고 나선다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심각하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사회권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유는 사람이 인간다운 생존을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인간의 물질적인 필요를 소홀히 다루면서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은 현재의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진짜 자유는 근본적인 사회·경제적인 변화가 함께 이루어질 때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자유권은 당장 실현할 수 있고 사회권은 그렇지 못하다고 말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다. 사회권만이 아니라 자유권도 자원의 제약을 받는다. 예를 들어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 고문 등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경찰 및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돈이 들지 않는가? 자원이 필요하기는 자유권이나 사회권이나 마찬가지다."

이러한 주장과 대립은 인권의 실현을 둘러싸고 항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견 대립이 극에 치우친다면 우리가 누려야 할 인권은 이런 저런 이유로 쪼개지고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유엔에서는 인간의 모든 권리는 서로 분리할 수 없는 '전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확인해 왔습니다. 인권의 한 측면을 침해하는 것은 전체 인권에 대한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회권 없는 자유권은 형식적인 자유가 되기 쉬우며, 자유권 없는 사회권은 장기적으로 보장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자리 없는 노숙자가 투표용지를 받는 일은 드물 것이며 선거에 관심을 갖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일정 정도의 사회보장 제도가 있다 할지라도 국민의 정치적 의견이 억압받는다면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그 제도는 축소되거나 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권은 나눌 수 없는 '전체'적인 권리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인권에 관한 국제적 약속

2차 세계대전 이후 각 나라의 대표들은 유엔에 모여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은 '조약' 또는 '규약', '선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약이란 국가간에 맺은 약속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국제법을 말하고, 선언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도덕적 권위를 가지는 문서를 말합니다. 한 나라의 정부가 조약을 비준한다는 말은 그 조약에 쓰인 법을 지키겠다는 뜻이고, 효력이 발생했다는 말은 그 조약에서 정한 숫자 이상의 국가가 비준하여 그 조약이 국제법으로서 인정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는 인권에 관한 국제적 약속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 부록에 중요한 약속을 전부 수록하였습니다.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아래의 내용은 세계인권선언 원문과 국제앰네스티와 유니세프의 축약본을 참조하여 인권사랑 방이 쉬운 말로 고쳐 쓴 것입니다. 원문은 부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우리 모두는 이성과 양심을 가졌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자매의 정신으로 행해야 한다.

제2조: 차별은 안돼!

피부색, 성별, 종교, 언어, 국적, 그리고 가지고 있는 의견이나 신념 등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

제3조: 안심하고 살아간다

우리는 누구나 생명을 존중받으며, 자유롭게 그리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제4조: 노예는 없다!

어느 누구도 사람을 노예처럼 다루거나 물건처럼 사고 팔 수 없다.

제5조: 고문이나 모욕은 싫다

사람은 누구나 고문이나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

제6조: 법의 보호를 받는다.

우리는 모두 어디서나 똑같이 법의 보호를 받으며 인간답게 살아간다.

제7조: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며 차별적이어서는 안된다.

제8조: 억울할 때는 법의 도움을 청하라

우리는 누구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법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재판을 해서 그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

제9조: 제멋대로 잡아 가둘 수 없다

사람은 정당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제멋대로 잡히거나 갇히거나 그 나라에서 쫓겨나지 않는다.

제10조: 재판은 공정하게

우리는 어느 누구를 편들지 않는 독립되고 편견 없는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다.

제11조: 잡혀도 반드시 유죄라고 볼 수 없다

공정한 재판으로 유죄가 결정될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죄인이 아니다. 또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리고 사람은 죄를 범했을 때에 현재 존재하는 법률에 따라서만 벌을 받는다. 나중에 만들어진 법률로는 처벌받지 않는다.

제12조: 나만의 세상을 가질 수 있다

나의 사생활, 가족, 집, 편지나 전화 등 통신에 대하여 아무도 함부로 간섭할 수 없다. 나의 명예와 신용에 상처 입지 않는다. 만약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제13조: 떠나고 돌아올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지금 살고 있는 나라 안에서 어디든 오고 갈 수 있으며,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수 있다. 어떤 나라에서도 떠날 수 있고 또 자기 나라로 돌아올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4조: 도망치는 것도 권리다

누구나 괴롭힘을 당하면 다른 나라로 도망쳐 피난처를 찾아 살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누가 보아도 나쁜 짓을 저지른 경우는 제외된다.

제15조: 어느 나라 사람이든 될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한 나라의 국민이 될 권리를 가지며, 국적을 바꿀 권리도 가진다. 누구도 함부로 나의 국적을 빼앗거나 국적을 바꿀 권리를 방해할 수 없다.

제16조: 사랑하는 사람끼리

어른이 되면 누구나 결혼하여 가정을 가질 수 있다. 인종, 국적, 종교를 이유로 한 제한이 있어서는 안되며 결혼할 사람 둘 사이의 자유로운 동의에 의해서만 결혼할 수 있다. 결혼에 있어서나 가정생활에 있어서나 설령 이혼할 때에도 남녀는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가정은 나라의 보호를 받는다.

제17조: 재산을 갖는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서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재산을 가질 수 있다. 자기 재산을 함부로 빼앗기는 일은 없다.

제18조: 생각하는 것은 자유다

우리는 누구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다. 스스로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으며, 생각을 바꾸는 것도 자유이고, 혼자서 또는 여럿이 함께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자유도 있다.

제19조: 표현하는 것도 자유다

우리는 누구나 의견을 가질 수 있고 또 표현할 수 있다. 누구도 그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사람은 누구나 모든 매체를 통해 국경과 상관없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정보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20조: 모일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평화롭게 집회를 열고 단체를 만들 자유가 있다. 그러나 싫어하는 사람에게 소속을 강요할 수는 없다.

제21조: 선거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선거를 통해서나 혹은 직접 자기 나라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누구나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선거는 올바르게 평등해야 하며, 누구에게 표를 찍는지는 비밀로 할 수 있다.

제22조: 사회보장제도를 누릴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각 나라의 구조와 자원에 따라서 또한 국제협력을 통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제23조: 마음놓고 일하기 위하여

사람은 직업을 자유롭게 골라서 일할 권리를 갖는다. 노동조건은 일하는 사람에게 공정하고 유리한 것이어야 하며, 일터를 끊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차별 없이 동일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일에 대한 대가는 일한 사람과 그 가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일하는 사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만들고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24조: 쉬는 것도 중요하다

사람에게는 쉴 권리가 있다. 무한정 일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은 합리적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한 휴식과 여가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제25조: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누구에게나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이 권리를 위하여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또는 자신이 어찌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나라가 제공하는 보장제도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어머니와 아이는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26조: 배울 수 있다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초등 기초단계의 교육은 무료여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원하는 누구나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은 실력 있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되어야 한다.

교육을 통해 우리는 자기의 인격을 발전시키고 사람의 권리와 자유가 소중하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전세계 모든 나라와 모든 인종과 모든 종교간에 서로를 이해하고 우호적으로 지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제27조: 즐거운 생활

누구나 자유롭게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할 권리를 갖는다.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나눠 가질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만들어낸 과학·문학·예술의 산물에서 나오는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제28조: 이 선언이 바라는 세상

우리 모두는 이 선언에 선포된 권리와 자유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국제적 질서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제29조: 우리의 의무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의무가 있다.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우리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에 따라 제한된다.

제30조: 권리의 짓밟는 권리는 없다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누구에게도 어떤 나라에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

소중한 사람



인권이 추구하는 가치

- 인권이 소중히 여기는 것은?

친해지고 싶은 친구가 있을 땐 어떤 마음이 되나요? 그 친구가 좋아하는 것을 속속들이 알고 싶어지겠죠. 친구가 좋아하는 것을 자신도 좋아하려고 노력하고, 친구를 기쁘게 해주려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권과 친해질 수 있으려면 인권이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아낄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인권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생명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합니다. 누구나 이 말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당연히 모든 인권 활동의 출발점입니다.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고귀한 이상과 가치도 생겨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인권이 생명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단순히 '목숨만 부지하면 된다'는 소극적인 자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발전적인 삶'을 창조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생명을 존중하는 참의미가 있습니다.

육체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경 파괴, 의료 시설의 부족, 부적절한 보건정책 등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문제삼고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성감별에 의한 고의적인 낙태, 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인 사형제도 등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유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다"는 말로 시작됩니다. '자유'는 우리 각자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 '선택'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인간다운 생존'을 추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노예나 예속 상태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을 받지 말아야 하고, 함부로 체포나 구금·추방을 당하지 말아야 하고, 사생활이나 통신에 간섭받지 않아야 하고, 이동과 거주의 자유 및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는 오직 다른 사람이 똑같이 갖고 있는 자유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일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세계 곳곳의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지키는 과정에서 억압받고 고통 당하고 있습니다.



평등

미팅에 나가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고향이 어디예요?" "학교는 어딜 나왔죠?" "믿는 종교는 있나요?" "나이는 어떻게 돼요?" 소위 '호구조사'에 해당하는 질문들인데, 간단해 보이는 이런 질문 하나 하나가 차별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 현실 생활입니다.

모든 사람은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고 하지만 '성별, 나이, 출신 지역, 종교, 피부색, 빈부' 등의 차이를 이유로 갖가지 차별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차별이 끼치는 해악은 한 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무엇보다도 차별 받는 사람은 사회 참여의 기회를 빼앗기거나 온전하게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성이라고 해서 해고의 우선 순





위가 된다든지, 아예 지원조차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차별에는 남녀차별, 장애인차별, 인종차별 등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유형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차별은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에이즈 환자에 대한 차별이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 등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인권이 이미 있는 차별에 대해서나 새롭게 등장하는 불평등 요소에 대해서나 촉각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고치려는 자세를 요구합니다.

정의

모든 사람이 골고루 권리를 누리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인권은 '정의'를 늘 고려합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의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자원의 재분배를 꾀하는 것, 누구나 교육과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마련하는 등이 '사회정의'와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인권이 도모하는 일입니다.

앞서 살펴본 '자유권'의 내용 중에서 법을 어긴 경우에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받아야 한다는 원칙, 유죄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교화와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한 인간적인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 등은 '사법정의'에 해당됩니다.



사회적 책임 · 연대

굶주려 쓰러져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홍수로 인해 살던 집과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고로 쓰러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럴 때 당연히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자 책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눈에 확 띠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만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에 흔하기 때문에 오히려 눈에 잘 안 띠는 문제들, 가령 빈곤이나 실업, 차별과 편견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도 중요한 사회적

책임입니다.

인권이 추구하는 '사회적 책임'은 고통받는 사람들 또는 피해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을 위해 주장하고, 그들을 돋는 '연대'로 표현됩니다. 이것은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들의 '고립'을 막고 문제 해결을 추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입니다.

사회적 책임을 실행하려는 사람이 없다면 인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과 연대의 실천은 인권의 존재 근거가 됩니다.

평화

살아가면서 이런 저런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갈등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해도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전쟁이나 폭력', '억압이나 강요'인 것은 문제가 됩니다. 갈등은 피할 수 없지만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은 '선택' 할 수 있다는 것이 인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권이 추구하는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벌어지는 온갖 갈등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인권은 서로의 다른 점, 즉 '차이'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추구합니다.



자연과의 조화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더운 여름에는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것조차 싫어집니다. 해마다 여름은 왜 이리 더워지는 건지, 지구에 뭔 일이 나도 단단히 난 것 같습니다. 무분별한 소비와 개발이 인간에게 경고음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이 사라져 가고, 공기도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식물과 동물이 지구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열대 우림의 55%가 이미 사라졌고, 매년 2만 7천여 종이 지구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



답니다. 하루에 74개종이, 1시간마다 3개종이 멸종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하버드 대학 생물학자 E. O. Wilson의 추정). 그 결과 전세계는 환경문제와 기상이변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는 인간만이 아닙니다. 인간은 수많은 동식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권리만을 생각하고 지구상에 같이 존재하는 자연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연과의 조화와 공존을 추구하는 일은 전 인류의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권지킴이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실천

“내 권리도 못 챙기는데 남의 권리는 무슨…….”

“인권 지킴이 활동이란 아주 소신 있고 희생정신이 강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야. 나 같은 보통사람은 할 일이 없어.”

“나는 규칙이란 걸 아주 잘 지키고 남에게 피해를 안 끼치는 사람이니까 인권 문제랑 별 상관이 없어.”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없나요?

만약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며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활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이미 있는 인권도 보장 받을 수 없을 뿐더러 발전 같은 건 생각지도 못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전혀 인권에 관심 없던 사람이 권리 침해를 당했다고 해보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를 것이고, 또한 자기 권리가 뭔지 모르므로 일방적으로 피해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권을 침해하는 쪽에서 “당신에겐 이런 권리가 있소”라고 가르쳐 주진 않거든요. 또한 인권의 잣대로 감시하는 사람이 없다면 권력자가 자기 권력을 아주 손쉽게 함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인권문제에 대해 문제 삼는 사람이 없다면 그들은 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될 것입니다.

그럼, 인권을 존중하는 의식이나 행동이 저절로 생겨나 발휘될 수 있을까요? 며칠 밤을 벼락치기로 공부해서 시험치는 일처럼 해낼 수는 없겠지요. 꾸준한 훈련과 연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의 훈련을 해야 할까요?

‘인권에 대해 아는 것’이 필요

우선 ‘인권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일이 중요한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인권의 개념과 내용
- 서로의 인권을 골고루 보장받기 위해 각 사람이 져야 할 의무와 사회적 책임의 내용과 범위
- 성차별, 장애인 차별, 지역주의, 인종주의 등 불평등과 차별이 발생하는 유형과 실태
- 인권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주요 사건, 운동, 조직 및 인물, 또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인권을 위한 투쟁
- 세계인권선언, 유엔 어린이 · 청소년 권리조약 등 인권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선언과 국제인권조약
- 헌법을 비롯하여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한 국내법과 제도

생활 속에서 인권을 지키고 옹호하기 위한 기술을 닦아야

- **말과 글로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기술:** 불만을 가진 채 뒤에서 용얼거리기만 하고 엉뚱한 방법으로 분풀이를 한다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리 없습니다. 적절한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 **남의 의견을 잘 듣고 토론하는 기술:** 토론할 때는 자기 의견을 적절하게 주장하고 방어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조용히 남의 말을 듣는 것은 '잘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성 차별이나 지역차별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조용히 경청하고 넘어가는 것이 잘 듣는 것이 아니니까요. 문제점을 발견하여 토론할 줄 알아야 합니다.
-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기술:** 다양한 차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관계는 '쌩'하고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차이는 받아들이고 합의에 기초한 약속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기술:** 인간관계를 형성함에 있어 상대방을 억압하고 좌지우지하려 들어서는 안됩니다.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갈등이 있을 때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법, 책임질 줄 아는 자세,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방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 **국내외의 인권보장제도와 기구를 활용하는 기술:** 인권침해에 대한 항의를 담거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편지를 직접 띠워 본다거나 정보와 자료를 요청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미 존재하는 제도와 기구를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써먹는 사람이 없으면 간판만 달아놓고

하는 일이 없는 형식적인 제도와 기구가 되기 쉬울 테니까요. 우리가 부지런히 활용해야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와 기구도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밖에도 대중매체를 포함하여 다양한 근거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는 기술,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분석하여 공정하고 균형잡힌 결론에 도달하는 기술, 대중매체 등에 담겨 있는 편견 · 고정관념 · 차별 등을 가려내는 기술 등이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필요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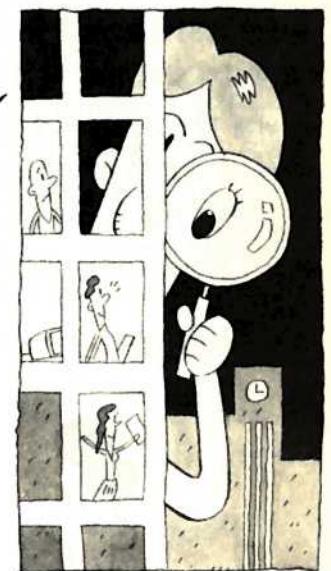
지금까지 살펴본 기술들은 혼자만 잘한다고 해서 습득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을 해야 서로 서로 챙길 수 있는 기술입니다. 더디더라도 함께하는 훈련을 통해 이런 값진 기술을 갖춘 인권 지킴이가 되어 봅시다.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

각 사람의 존엄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인권에 대한 지식은 겹데기에 불과하고, 인권을 옹호하는 기술 또한 시늉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인권에 대해 배우기 어려운 것은 인권을 존중하는 환경에서만이 인권의 가치를 제대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만이 말할 수 있고 학생은 듣기만 해야 하는 교실,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분위기, 사소한 차이로 친구를 따돌리는 태도 속에서는 인권에 대해 제대로 배울 수 없습니다. 인권교육이 중요하면서도 실천하는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이런 환경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환경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겠지요? 자신의 인권을 찾고 싶고 인권을 존중하고 싶은 여러분이라면 스스로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인권에 대한 학습은 '인권에 관한 지식'과 '인권을 옹호하는 기술'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가 어우러져야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건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속에 담긴 수많은 경험과 생각을 표현하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되짚어 보고 분석하는 가운데 서로에게서 배워 봅시다. 인권의식으로 자신을 훈련하는 것이야말로 인권을 지키고 옹호하는 활동의 출발점이고, 그 출발점에 함께 서있는 여러분 각 사람은 서로의 교과서입니다.



인권을 위한 행동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날

“장애인에게 평등과 참여의 권리를!”

-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

유엔은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정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세계행동계획’을 발표한 일이 있다. 이 계획이 마무리된 1992년, 유엔은 세계행동계획이 채택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 12월 3일을 ‘세계 장애인의 날’로 지정하였다.

장애인은 세계 인구의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대다수 장애인의 생존은 위협받고 있고, 각종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상처받고 있다. 세계 장애인의 날은 바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편견과 차별을 반성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재검토해 보



는 날이다. 또한 장애인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당당히 선언하고 그것의 보장을 요구하는 날이기도 하다.

그러나 ‘장애’가 차별의 이유가 되지 않는 사회, 장애인의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 장애 청소년이 비장애인 청소년과 어울려 교육받을 수 있는 사회를 고민하지 않는다면 ‘세계 장애인의 날’은 그저 달력에 쓰여 있는 이름에 불과할 것이다. 한편, 우리 나라에서는 독자적으로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는 모든 민족과 국가가 성취해야 할 인권의 공통 기준으로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은 세계 여러 나라가 인권과 관련하여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채택·선언한 문서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다시는 전쟁의 참상을 되풀이 해선 안된다는 생각에서 또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유엔이 창설되었다. 유엔은 창설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첫 작업 ‘인권선언’을 기초하기 시작했고, 3년여의 작업 끝에 결실을 보게 되었다.

이 선언은 각 나라를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않지만 인권의 향상을 위한 국제적 이정표 구실을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많은 나라의 헌법과 인권을 보장하는 국내법 및 국제법의 기초가 되었다. 이런 이유로 온 인류는 세계인권선언 제정일인 12월 10일을 ‘세계 인권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2부 장애인 인권마당



제1장 기회의 평등, 결과의 평등 · 김정열

제2장 접근권행사에 있어서 장애인 차별 · 권선진

제3장 고용현장에서 장애인 차별 · 유동철

제4장 소비자로서의 장애인의 권리 · 조문순

제5장 폭력으로부터의 장애인 인권유린 · 조창영

기회의 평등, 결과의 평등

김정열(장애인인권의문제연구소장)

1. 한국의 장애인 인권상황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화에 대한 기여도, 한반도 평화무드 조성 그리고 세계인권향상에 공로한 점 등 세계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상 백년째 되는 올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그는 평소에도 인권을 강조했고 '인권 대통령'이라고 불리기를 원했다. 그리고 지난 8월 21일 법무부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서 인권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인권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인권법(안) 제32조 2항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나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본다"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8조 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 현실은 장애인에 대한 평등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 시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재임용에서 탈락해 11년 동안 정들었던 대학강단을 떠날 위기에 처한 한 시각장애인 교수, 터너증후군으로 인간다운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는 일곱 살배기 친자식을 죽여야 했던 비련의 어머니, 첫 출근의 기대에 부풀었으나 회사측으로부터 함께 일하기가 어렵다는 전화를 받고는 비관 끝에 자신과 늘 함께 했던 전동휠체어와 함께 달리는 전동차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뇌성마비 장애인 등의 사건은 모두 최근 9월에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례이다.

또한 1급 뇌성마비 여성장애인 유순자씨는 남편의 심한 폭력을 이기지 못해 남편을 죽였고,

청각언어장애라는 이유 하나 만으로도 혼혈하는 것을 거절당했고, 양복발에 의지해야 걸을 수 있는 여성장애인은 치과의사에게서 목발을 밖에다 두고 들어 올 것을 요구받아 황당해 했고, 신체적인 이유(키가 적고, 얼굴이 얹거나 흉터가 있고, 음치고, 신체상에 장애가 있는 경우 지원자격이 없음)로 교원을 양성하는 교육대학에 입학할 수 없다는 코미디 같은 규정 때문에 시험에서 탈락했고, 자신의 아들이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40일된 아이에게 청산가리를 탄 우유를 마셔 죽게하는 등등 여러 형태의 반인권적인 사회현상은 올해 중앙 언론에 알려진 사례들이다.



2. 한국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¹⁾

우리 전통사회에서 장애인은 사회에서 늘 멀시 당하고 소외당한 채 살아왔다고 볼 수 있다.²⁾ 전통사회의 장애인관을 엿볼 수 있는 각종 호칭을 살펴보면 장애인을 부르는 끝말이 "이"나 "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을 경멸의 대상으로 표현한 각종 속담에서 찾아볼 수 있

1) 김정열, 「장애인대학생의 교육시설 접근에 관한 연구」 논문 중 이론적 배경 일부 인용

2) 차홍봉, 「역사적으로 본 우리나라의 복지이념과 사회정책」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재활심포지엄, 1993

다.³⁾ 그리고 과거 임금들은 당시의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때때로 궁궐에 불러 모아 잔치를 베풀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러한 관행은 오늘날에도 유지되고 있다.⁴⁾ 장애인 일반에 대해서는 이 구동성으로 동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정작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도움을 주는 문제에 부딪치면 무관심하거나 냉담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사회복지의 문제를 사람이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인재(人災)로 보지 않는 우리 전통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우리의 전통적인 인식이 계속되면서 산업사회로의 급속한 이전 과정에서 장애인을 더욱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규정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⁵⁾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볼 때, 한국의 장애인관은 약자무시(弱者無視)의 전근대적인 사회적 관습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⁶⁾

또 한편으로는 한국민족의 특유의 동질의식·완전인간의 지향 등이 그 원인이 된다고 한다.⁷⁾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비장애인(非障礙友)의 주관적인 발상에서 기인하는 것이 크다고 할 수 있다.⁸⁾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장애를 입고 살아간다는 것이 현대 의학적 인간학의 통찰이다.⁹⁾

3) 안태윤은 우리나라의 속담중 장애인에 대한 속담의 분포는 맹인에 관한 것이 48개, 병신이 7개, 앓은뱅이가 6개, 캐머거리가 5개, 언청이가 5개, 미친이(狂)가 4개, 곰배팔이가 1개, 바보가 1개, 뻣정다리가 1개로 되어 있다고 조사한 바 있다. 안태윤, 「한국인의 심신장애인에 대한 전통적 견해에 관한 일 연구」 한국사회사업대학논문집 제2집, 1969, p.80-88 참조.

한편 장애인 속담에 나타난 편견에 대해서는 이규태, 「장애인복지에 대한 한국인의 의식구조」 현대사회와 장애자복지,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1981, p.53-54 참조

4) 김상균, 역사적으로 본 우리나라의 복지이념과 사회정책에서 토론자 발제를 통해서 '일년에 한번씩 청와대로 장애인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푸는 온정은 있으면서도 정작 제도적으로 장애인이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은 없다'는 지적에서 나온 말임

5) 이경동, 「우리 나라의 장애자복지에 관한 사적고찰」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5, p.15-16

6) 안태윤, 전계논문 p.88

7) 이규태, 상계논문, p.54-62

8) 강경선, 「장애인문제에 관한 사회구조적 고찰」 장애인 복지법제, 법무자료 제 122집, 1989, p.41

9) 태교훈, 「철학적 인간학에서 본 정신건강의 의미」 실학전망 제81호, 1988, p.70

3. 국제기구의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서¹⁰⁾

유엔은 1980년 1월 13일 「세계장애인의 해 행동계획」을 채택하면서 장애인들이 사회생활 및 사회개발에 있어서 "완전참여와 평등"(Full Participation and Equality)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장애인에 관한 모든 문제는 전체적으로 인식되어야 하고, 특별한 욕구에 따른 지원이 고려되어야 하며, 개발도상국에 있어서의 장애인 문제의 해결은 국가개발전략에 통합되어서 추진해야 하고, 장애가 무엇인가에 대한 대중의 이해, 그리고 장애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방안마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입안할 때 장애인의 능력개발에 중점을 두고, 장애인이 사회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일련의 제한적이고 차별적인 것들을 처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접근권을 보장하는 등의 노력을 담고 있다.

유엔산하 기구인 ESCAP(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사회이사회)은 1992년 12월 5일 「아시아·태평양지역 장애인 10년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여기에는 국가조정위원회구성에 대해서, 입법을 통한 장애인정책에의 접근문제, 정보에의 접근문제, 일반인의 인식개선에 문제, 접근가능성과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문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교육, 훈련 및 고용, 장애발생예방, 재활서비스 확대, 보장구 그리고 자조조직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1993년 6월 25일 세계인권대회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에는 인권차원에서 장애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장애문제는 복지서비스의 확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권 측면에서 접근할 때라야 비로소 장애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았다.

이렇게 장애문제를 권리문제로 인식해서 장애관련 권리선언은 지난 1971년 12월 유엔에서 결의한 정신지체인의 권리선언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선언은 정신지체인들이 다양한 활동분야에서 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원조하고, 가능한 한 그들의 통상적인 생활(Normal life)에 통합될 수 있도록 촉진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1975년 12월 9일 장애인에 대한 기능적인 정의, 인간의 존엄성 존중, 시민권과 정치권, 자립(Self-reliant), 경제적, 사회적 보장, 국가계획에서 고려될 특별한 요구, 가족생활, 착취로부터의 보호, 법적 원조, 정보접근 등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의 권리선언'이 유엔 30차 총회에서 결의되었다. 1976년 세계장애인의 해 선언, 1980년 세계장애인의 해 행동계획, 곧이어 1980년 여성을 위한 10년 세계회의 평등, 개발 평화에서 모든 연령 여성장애인의 상황 개선을 채택했다. 이

10) 김정열, 「장애인 인권, 장애인정책입문」 도서출판 나눔의 집, 2000

어 유엔 아동기금에서는 아동 장애의 예방과 재활, 1955년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장애인의 직업 재활에 관한 권고, 1975년 국제노동기구는 제네바대회에서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사회재통합에 관한 결의 등이 행해졌다. 1977년 세계맹인복지협의회, 농·맹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헬렌켈러 세계회의에서 농·맹인의 권리선언을, 1972년 세계농아연맹 총회에서는 농아인의 권리선언을 채택한 바 있다.

이상과 같이 장애인에 관한 국제문헌이 장애인의 인권을 실천적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장애인인권은 장애인이 타 시민과 동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평등이 실현될 때 보장되고, 이러한 평등은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환경 속에서 실천될 때만 정당화된다. 그리고 평등하고 정상화된 장애인의 권리는 또한 사회통합이라는 형태를 달성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권리는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며 그 구체적 실천은 평등과 정상화 그리고 사회통합의 세 가지 형태가 동시에 충족될 때 가능해진다.¹¹⁾ 선진국은 장애문제를 권리로 보고 해결방식도 인권에 기초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미국의 장애인법(ADA), 영국과 호주의 장애인차별금지법(DDA), 스웨덴의 경우는 일반 사회정책안에서 장애인을 완전통합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일본에서도 일부에서는 장애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보고 장애운동의 기반을 반차별 운동으로 삼고 있다.

4. 장애인 차별의 원인, 불평등(不平等)

한국사회에서 '장애가 왜 문제가 되고 있는가' 아직까지 그 문제의 원인에 대한 진단과 해답이 정확하게 내려지지 않고 있으나 그저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결국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사회에서의 장애인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장애인은 무능력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

둘째, 자유시장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소외계층으로 위치지어질 수 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

셋째, 종교적이거나 전통적인 관습에서 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편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11) 이익섭, 「장애인에 관한 국제문헌과 행동지침」 연세사회복지연구 제1권, 1993

필자는 우리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문제의 본질을 이해함에 있어서 하나의 흐름을 찾는다면 그 원인을 '불평등(不平等)'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¹²⁾

장애인 인권은 자유권보다는 사회권에 기초해서 찾아야 명확하게 이해 할 수 있다. 또한 장애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인해 생겨나는 것이라기 보다는 사회구조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되는 경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장애 때문에 법적으로 명시적으로 차별하는 근거는 없으나 실제 사회 생활에 있어서는 차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별로 인해 불평등현상과 원인을 보면 첫째,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하지 않아 사실에 있어서의 대립으로 인한 불평등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차별이다. 최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대학입학 거부에 대한 고발건과 대학교수 재임용 무효확인소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에 대한 과학적인 사실을 토대로 해서 이해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정보를 근거로 차별하는 경우들이다. 이는 과학적 관찰에 의해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둘째, 언어상의 대립 또한 우리 주변에서 종종 벌어지고 있는 차별 사례다. 청각언어장애인의 경우, 뇌성마비로 인해 언어상의 문제가 있거나 자폐 등 발달장애로 인해 일반 사람들과 다른 언어이해에 대한 다른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 종종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

셋째, 태도상의 대립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이 서로 얹혀 있다고 본다. 전통적인 측면 - 유교의 영향으로 무례하다는 잘못된 관념, 전생의 업보에 대한 잘못된 인식 그리고 농경사회에서 노동력에 공급측면상의 불리한 처지 등의 원인 -에서 형성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계속되면서 산업사회로의 급속한 이전 과정에서 장애인을 더욱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규정¹³⁾함으로써 태도상의 대립으로 인한 차별이 고착되고 있다.

이렇게 불평등에 의한 차별이 일어나는 원인은 여러 형태의 대립을 가중시키고 있고 그 결과는 '부정적 차별(否定的 差別)'로 나타난다.

12) W.James는 평등문제에 관해서 서로 의견이 대립이 생겼을 때 그 원인을 사실에 있어서의 대립, 태도에 있어서의 대립, 언어에 있어서의 대립 중 불평등에 대한 원인이 어느 것에 기인하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불평등구조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3) 김정열, 「장애인 대학생의 교육시설 접근권에 관한 연구」 1996, p.20-21

5. 장애인 인권침해의 대표적인 유형과 사례¹⁴⁾

■ 생활환경

장애인은 신체적 손상과 기능장애로 인해 교통, 통신설비, 공공건물, 도로 이용 등의 물리적인 환경에 적응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물리적인 장벽은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제한의 원인이 되고, 일로 인해 사회적 고립과 격리를 경험하게 됨으로서 사회적 불평등 구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언론에 나타난 차별사례의 제목만 보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식당에서 밥맛 떨어진다고 못들어 오게함
- 부산 범일동 한 백화점 스포츠센타에서 장애인라는 이유로 거절당함
- 공공기관 이용시 편의시설 부재
- 출근 시간에 버스를 타면 바쁜 시간에 탄다고 핀잔을 좀
- 휠체어로 접근이 불가능함, 버스나 지하철을 탈 엄두도 못냄. 때문에 관공서나 어디를 가려고 해도 엄두가 나지 않음.
- 시각장애인의 경우 은행에서 대출이나 카드 발급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함
- 음식 메뉴를 볼 수 없음.
- 목욕탕에 갔을 때 다치면 누구 책임이나며 오는걸 꺼려해 한동안 목욕탕에 가지 못함.
- 구청이나 병원에 수화통역사가 없어서 많이 어려움.
- 청각장애인의 경우 공중전화 통역도 어렵고 팩스도 없어 힘듬.
- 경찰서, 파출소에서 수화통역사를 대동하여 오라는 불친절한 행동과 면박을 받음.
- 리프트가 있어도 담당자가 없거나 있다 해도 작동법을 잘 모름..
- 지하철 이용시 무료 승차권을 동냥 주듯이 던짐.



■ 직업생활

우리 사회에서 장애라는 이유만으로 직업생활에 있어 인권침해의 경험이 절반 정도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생활에 있어서 차별경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교육권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차별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양상을 보면

- 보수 면에서 동등한 능력을 가진 사람과 차별 대우를 받음
- 장시간 일을 했음에도 작업량이 적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적게 받음
- 일반 회사 취업시 끊임없이 눈치를 주어 그만 두게 함
- 취업 면접시 능력이 있음에도 무조건 거절당함
- 아르바이트시 주인이 처음에는 장애인인지 잘 모르고 있다가 몇 일 후에 알고 나서는 손님들이 보기 좋다며 해고함
- 듣지 못하기 때문에 작업지시를 못 알아들어 고용주가 횡포를 부리거나 마치 내가 하기 싫어서 하지 않은 것처럼 일방적으로 비웃음
- IMF로 인해 명예퇴직 0순위였음



■ 주거생활

가족중에 장애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주인으로부터 입주를 거부 당한 경험이 있는 장애인들을 주위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경우도 비슷한 경험을 최근에 당한 적이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대응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다른 건물을 임대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장애를 이유로 집값을 부당하게 높게 지불한 경험을 한 경우도 있고, 주택 개조시 주인으로부터 거절 당하는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 또 한 이웃과의 친목활동에 있어 의도적으로 배제를 받은 경험이 많이 있고, 공동주택에서 편의시설을 사용하는데 불편을 경험한다고 한다.

잘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주거 생활에 있어서의 차별사례는 의외로 구체적이다.



14) 한국장애인 인권백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1999

- 훨체어 때문에 계단의 경사로 설치를 하는데 이해가 없음
- 재수가 없다는 이유로 임대를 거절함
- 동네 단합대회 같은 행사에 의도적으로 제외시킴
- 반상회에 서로 불편하니까 좋은 말로 오지 말라고 함
- 농아인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싫다고 하여 동네에서 이사가라고 함
- 이웃에서 빙정대고, 옆에 있는데도 험담을 하는 등 따돌림을 당함

■ 의료시설 이용

뇌성마비 장애인, 발달장애, 시각, 청각 장애인 등 비교적 장애가 심한 경우에 의료시설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치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등을 이용함에 있어 거부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 장애인이 병원을 이용시 편의시설미비는 물론 장애인 보조시설이 너무 부족하여 병원치료에 어려움을 겪음
- 병원 치료받을 때 정신지체인이라는 이유로 진료에 대해 대충 진단을 내려 오진을 받은 적이 있음
- 치과, 이비인후과 이용시 몸을 많이 움직인다는 이유로 진료 거부를 당함
- 총무과 직원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2명의 보증인을 요구(집이 있어야 하고 재산세 납부 영수증) 함
- 장애인이란 이유로 진료보다 진료비납부를 먼저 요구받은 경험이 있음



- 보건소에서 감기에 걸려 예방 접종을 하러 갔는데 간호사가 앞도 안 보이면서 혼자 다닌다며 보호자를 동반해야지만 진료를 해준다고 하여 아주 불쾌한 경험이 있음
- 진료차례가 되도 듣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진료하게 하여 장시간 기다림
- 일반인과 같이 진료를 받았을 때 일반인에게는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장애인에게는 설명이 없고 '가시오' 함

■ 교육환경

법적으로 장애인의 교육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아직도 여러 형태의 차별이 일어나고 있으며 유치원교육에서부터 대학교육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직·간접적인 교육차별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 급우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소위 “왕따”를 당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특수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수화를 모르는 교사가 있어 수업에 매우 어려움을 겪는 경우
- 대입 시험시 신체장애라는 이유로 한의대 입학 거부사례
- 일반학교입학 거부, 특수학교 진학 강요
- 초등학교 6년생인데 담임선생님으로부터 “배우는 것도 없는데 왜 부모가 학교에 보내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들어 부모로서 너무 당황하게 함
- 일반 유치원에 통합을 시키기 위해 보냈는데, 원장을 비롯, 담임으로부터 매번 힘들다는 소리를



들으며 나오지 말기를 원하는 말투를 자주 하여 결국 그 유치원을 계속 다니지 못하게 함

- 주변 친구들이 장애를 놀리거나 괴롭힘을 당함
- 선생님들이 일반반 아이들과 특수학급 아이를 차별함
- 장애학생의 진로지도에 대해 무성의와 무관심을 보임

■ 가족생활

가족들이 장애인을 대하는 잘못된 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극단적인 보호태도를 보이거나 이와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혼자서는 절대 외출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과보호로 인해 자립기회를 주지 않거나 가족 행사시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형제 결혼 시 상대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려해서 인사를 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 가족의 혼사 문제시 장애인이 있다는 이유로 파혼된 적이 있음
- 형제들의 결혼시 상대방 가족들에게 인사를 못함
- 할아버지 초상 때 못 오게 함
- 가족 외출시 장애인 자녀만 제외시킴
- 조모가 손주가 장애인라는 것을 알고 나서 고아원이나 농아시설에 보내라고 부모님에게 강요함
- 가사일을 도울때 장애인 본인은 할 수 있는 만큼하는데, 가족들이 알아주지 않고 무시함
- 가족이 모두 외출할 때는 혼자 집에 있음, 그리고 가족 행사에는 아예 거기에 갈 생각도 안하고 데리고 갈 생각도 안 함
- 외식하러 갈 때 가끔 장애인 모르게 가는 적이 있음

■ 문화, 체육 생활

장애인의 문화생활을 운운하면 '별 요구를 다한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하다. 경제수준이 높아지면 당연히 수반되는 문화, 여가 활동에 있어 장애인만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화관, 연극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미비 그리고 어떻게 장애인이 이런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는 일반인들의 태도로 인해 많은 장애인들은 문화생활에 있어 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 수영장에서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만으로 강습을 받지 못함

- 휠체어 장애인인데 다방이나 호프집에 갈 엄두도 못 냄
- 청각장애인에 우리나라 영화는 자막처리가 되지 않아 외화만 보게 됨

· 수영장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누가 책임지나며 오길 꺼리는 듯한 어투로 얘기해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어 괴로웠음

- 음식점이나 다방 등에 출입할 때 장애인이기 때문에 고객의 입장에서 보지 않고 구걸하러온 사람으로 오인 받은 적이 있음
- 문화, 여가, 스포츠활동에 있어 농아인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 억울하고 답답함



■ 공공기관이나 선거에서의 차별

가장 차별을 줄일 수 있는 부문에 해당함에도 적지 않은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선거는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면 장애인이 당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의 차별을 가늠해 볼 수 있겠다.

- 공공행정기관 이용시 직원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귀찮아 함
- 동사무소 이용시 본인이어도 보호자가 대동해야 문서를 떼어 줌
- 공공근로를 하기 위해 동사무소에 접수하러 갔다가 매우 불친절한 태도와 비협조로 결국 구청까지 가서 구직을 신청하여야 했음
- 경찰관들의 몰이해와 불친절
- 관공서에서 접수 및 안내 창구의 불친절
- 인감이 필요해 동사무소 방문했는데 무시하고 상대해 주지 않음.
- 통역이 없어 의사전달이 안됨
- 해당부서가 2층에 있어서 담당자와 상담을 못하는 경우
- 선거시 정신지체라는 이유로 선거권에 대해 무시당함
- 부재자 투표 대신 투표장에 나가기를 강요당함

- 투표장소가 2층이라 투표하러 가는데 지장이 많음
- 장애로 인해 후보자의 내력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부재자 투표의 경우에도 보호자나 자원봉사자가 없어 통행할 수가 없어 아예 포기한 경우가 많았음
- 선거 때 수화통역 없어서 연설이나 공약 등의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음
- 투표절차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음



■ 여성장애인

우리 사회에서 여성장애인으로 살아가는데 어떠한 심정이냐는 질문에 80.9%의 여성장애인은 '매우 혹은 어느 정도 어렵다'고 응답하고 있다. 일부이기를 바라지만 결혼은 아예 생각지도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보면 우리 사회에서 여성장애인의 인권은 최악의 상황임을 알 수 있다.

- 직업이 없고 경제적인 주권이 없어 가족에게 미안하고 대소사에 대해 의견개진을 포기함
- 시댁 식구들이 가끔 말을 빙정댐
- 집안에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모두 내탓으로 돌림
- 아이를 낳을 때 혹 유전이 될까봐 가족들로부터 약간의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음
- 가까운 친구조차 여성으로서의 생리 현상도 없는 줄 아는 경우
- 시설에서 정신지체인의 경우 불임 수술을 강제로 시키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음



■ 기타

올해에 들어서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여성정신지체장애인 성폭행으로 인한 고발건수가 18건이나 된다. 과거에는 주로 수용시설에서 일어난 성폭행 고발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나 최근에는 직장에서 동네에서 그리고 집안에서 일어난 성폭행 고발건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과거에도 있었으나 이제는 이러한 문제를 덮어두기보다는 장애인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 사회가 이러한 자유권에는 인권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군포에서 발생한 남편을 살해한 유순자씨의 경우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 여성장애인의 가정폭력에 대한 정당방위를 인정해주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시각장애 학생 대학입학 거부사례, 보험차별, 수용시설내에서의 각종 인권 침해 사례 등의 다양한 형태의 차별사례들이 드러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우리 사회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6. 장애인 인권법주

우리 사회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은 '모두가 누리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가?' 이 물음에 기회의 평등은 어느 정도 보장받고 있지만 결과적 평등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법에 명시적으로 장애인을 차별한다는 조항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 차별에 따른 불평등 상황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 생존권

상당수의 장애인은 절대적 빈곤상태에 놓여 있다. 지난 '95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장애인 실태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 월 평균 소득이 40만원 미만이 46.5%로 절대 소득액이 극히 낮다. 이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1백39만 8천원과 비교해 보면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 정부가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직접 급부보장책은 장애인수당이 유일하다. 그것도 일부 생활보호대상자 정도의 생활 수준에 있는 중증장애인(1.2급, 정신지체의 경우 3급)에게만 해당하는 월 4만5천원의 생계보조수당이 전부이다.



장애인의 생존권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노동능력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장애인의 경우 대상자격에 있어 적극 수용해야 하고, 장애인 특성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각종 수당제도를 통해 장애인의 생계대책 작동을 통해 장애인의 생존권 확보가 이루어 질 수 있다.

■ 노동권

대부분의 성인 장애인들은 만성 실업 상태에 놓여 있고, 일반 노동자보다 열배가 넘는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나라 월 평균 실업률이 2.4%인데 반해 장애인 실업률은 27.3%이다. (1995. 복지부). 취업되어 있는 직종도 생산직이 68.7%이며, 임금수준도 20-40만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300인 이상 상시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는 사업장은 2%의무 고용토록 하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 있으나 지난 9년 동안 0.51%만을 이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나라는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기업환경이 좋은 편인데 비해 오히려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장애인고용을 기피하고 있는 형편이다. 더욱이 장애인 복지 방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격리수용차원의 장애인 전용공장 설립 등이 모색되고 있으며 이것은 장애인 고용을 향상시키는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웬만큼 합리적인 기업가가 아니면 생산성이나 능력을 판단하기에 앞서 단지 장애인이라 는 이유만으로 고용을 거린다. 이것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 때문이다.

이런 편견의 극명한 예가 있다. 언젠가 사법연수원을 졸업하는 6명의 장애인 연수생들이 판사를 지망하였다. 당시 인사권자는 공식적으로 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임용을 거절하였다.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장애인이 절룩거리며 법정에 들어서게 되면 법정의 품위를 떨어뜨린다는 이유를 들어 판사임용을 거절하였던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이러한 편견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의 취업이 더욱 곤란해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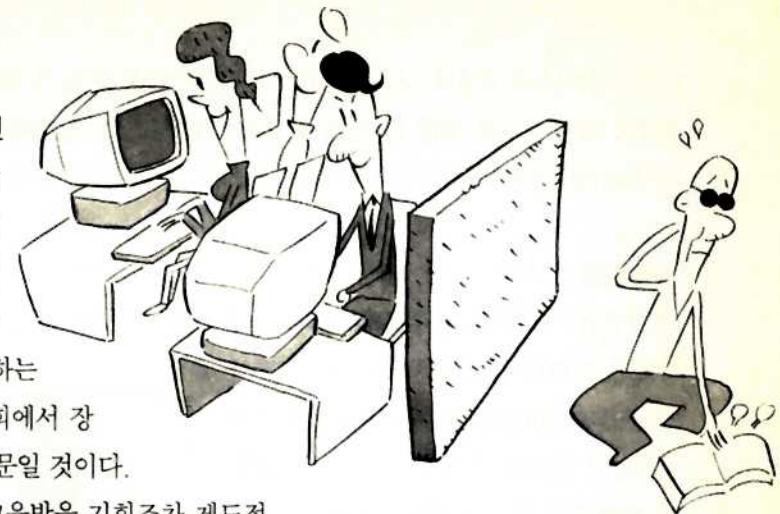


■ 교육권

교육을 받을 권리는 보편적 권리에 속한다. 한국 사회에서 살고 있는 한국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권리 중에 하나가 교육권이다. 그런데 새삼 장애인에게 있어 교육권을 강조하는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교육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일 것이다.

50%를 넘는 많은 장애인은 교육받을 기회조차 제도적으로 막혀 있다. 우리의 교육환경은 통합교육은 말조차 꺼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장애인의 교육권은 일반교육현장에서 통합교육이 가능하도록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겠고, 이를 위해서는 일반 학교에 특수교육 전공 교사를 배치해 장애아동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 건강권

우리 국민은 기본적으로 의료보험제도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다. 장애인도 전국민 의료보험제도에 의해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다.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다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장애를 입는 경우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최근 적극적인 권리개념으로 건강권이 논의되고 있다. 건강권이란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의 일부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 핸디캡이 없는 환경조성, 자율성 보장 그리고 중증 장애인 중심의 재활 정책이 확립해야 한다.¹⁵⁾ 장애인의 건강권이 실제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장애를 입을 정도의 사고나 질병을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대처 능력이 있어야 하겠다.

■ 보육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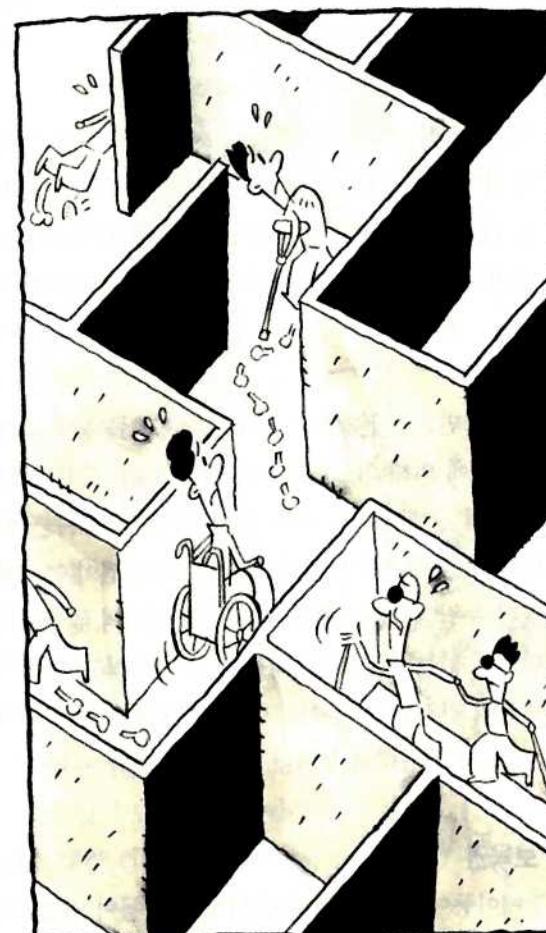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의 경우 일반 아동이 있는 가정보다 물적, 정신적인 부담이 훨씬 큰 상황에 놓여 있다. 한국의 정신지체아를 둔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생활이 아무리 어려워도 직장을 가지기가 매우 힘든 형편이다. 왜냐하면 부모가 일하는 동안 하루종일 아니면 하루 중 일정시간을

15) 이일영,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보장」 장애인정책입문, 장애인권의문제연구소 2000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기관에 아이들을 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장애아이를 둔 부모들은 장애를 가진 아이를 돌볼 수 없을 환경에 처해 있거나, 장애아동을 안심하고 맡길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다.

■ 접근권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4 조는 장애인의 접근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로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동등하게 이용하고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리고 장애인인권헌장은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표현과 정보이용에 필요한 통신, 수화통역, 자막, 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장애인의 접근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권리가 주어진 명시된 법이 있으나, 우리 사회환경은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자유롭게 다닐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우리 사회에서 독립해서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우리나라에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이 집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계획해서 지어진 집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정부에서 계획하는 신도시를 설계함에 있어서나 주공아파트를 건설하는데 잘 계획되고 살기에 좋은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장애인의 편의시설은 매우 제한적인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접근권은 장애인이 독립생활이 가능성 정도에 따라 판단되어 진다.



■ 거주이주권

장애인에게 있어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가. 생활시설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은 그 시설을 떠날 수 없다. 공식적으로 보호자가 있는 가정으로 다시 데려가거나, 그렇지 않는 경우는 대체로 시설에서 생을 마감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이 시설을 선택할 권리가 없다. 생활시설에서 생을 마쳐야 하는 장애인의 경우 사실상 거주이주권이 없다. 장애인의 거주이주권이 가능하려면 집을 빌리는데 거절당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생활시설의 경우 소규모화를 통해 지역주민과 물리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시설운영에 지역인사가 적극 참여함으로써 장애인의 거주이전권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 문화향유권

장애인의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한적인 상태이고, 문화와 레저는 장애인에게 있어서는 사치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제공되는 문화적 활동에 참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아직도 문화적 생활은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기에 어렵다. 이것은 방송매체, 문학, 교육장비, 문화시설 그리고 레크레이션 장치, 정보 등에 적용된다. 단적인 예로 시각장애인들은 점자와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된 인쇄물, 이야기책 등의 서비스를 받기 힘든 형편이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은 청각장애인을 위해 문화적이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수화비디오로 공급해야 하고, 매일 TV 뉴스를 수화나 자막처리가 필요하건만 거의 실현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혼자서 이동이 힘든 장애인 중에는 30년만에 처음으로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셨거나 40년만에 처음으로 바다를 보았다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장애인들은 모든 사람이 누리고 있는 문화와 여가생활을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유가 사회 물리적인 환경이 원인이 되었든 생계문제가 우선 해결되지 않아 문화나 여가생활은 아직은 장애인에게 있어서 사치로 생각해서든 어쨌든 적지 않은 장애인들이 문화생활을 원활하게 향유하지 못하고 있음은 분명한 것 같다.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이 확보되기 위해 제도적인 지원은 물론 ‘장애인 문화 1% 나누기 운동’을 통해 국민이 장애인과 함께 문화공유 기회의 확대를 통해 장애인문화향유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 이동권

장애인의 우리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넘어야 할 벽이 너무 많다. 휠체어를 타고 혼자서 다닐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 학교를 혼자서

다닐 수 없다. 그래도 어렵사리 대학에 입학한 학생 중에는 대학 캠퍼스 내에서 조차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교 건물을 이용하는데 너무 힘들고, 원활하게 강의에 참여할 수 있는 보조 장치가 없어서 계속해서 수학할 수 없어서 학교를 그만두기도 한다.

버스에는 휠체어리프트 장착율을 높이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등 이용 가능하도록 편의설비를 갖춰야겠고, 택시 이용 시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하다.

■ 생활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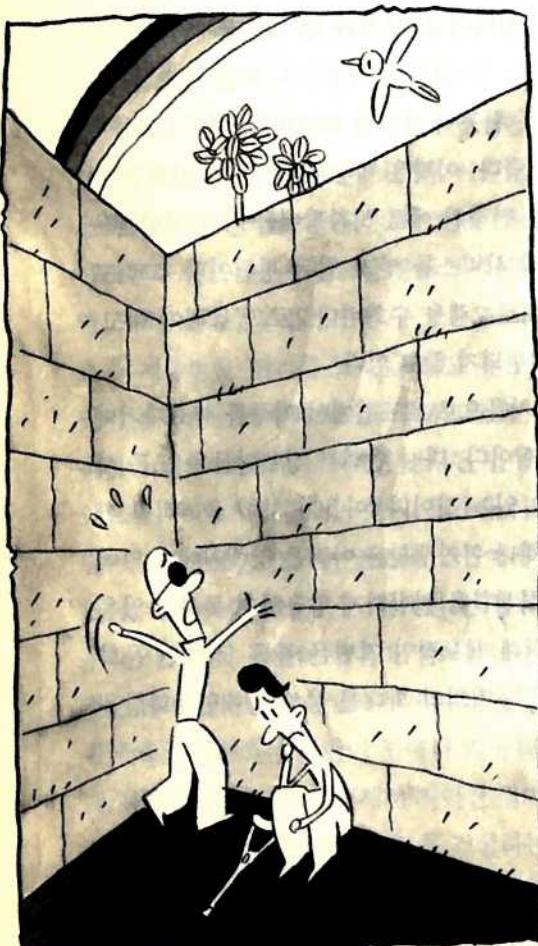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지방자치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복지행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방정부가 사회적 서비스를 책임질 수 있는 유리한 위치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제가 지방적 욕구와 조건에 따른 서비스가 가능하게 한다. 모든 지방정부는 시설에서 살지 않는 장애인과 노인들을 위해 조직된 가정보조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방자치제의 낮은 재정자립도 때문인지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에 살고 있는 장애인의 욕구와 상황에 따른 지자체별 특별 복지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하고, 지역주민들과의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확대를 통해 장애인의 생활권이 확보되어야 한다.

■ 정보접근권

정보는 숨쉬는 것과 같을 만큼 사회생활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만일 정보 없이 살아가라면 차에 연료를 공급하지 않고 운행하라는 것과 같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소외계층의 경우, 특히 장애가 있는 경우 더욱 더 정보에 소외되고 있다. 특히 정신지체장애, 청각언어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시각장애를 가진 경우는 정보접근에 있어 매우 불리



한 상황에 놓여 있어 이들을 위한 소프트웨어개발과 지원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겠다.

■ 보행권

자동차 중심의 도로정책은 인도환경을 엉망인 상태로 만들어 놓았다. 휠체어이용자, 시각장애인 등에게 있어 인도(人道)는 단지 불편하다는 수준을 넘어서 위험지역에 가깝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마음놓고 걸을 권리조차 막혀 있어 보행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선거권

장애인복지법 제23조는 장애인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설비의 설치, 선거권 행사에 관한 홍보,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매번 선거때마다 장애인들이 투표를 할 수 없는 물리적인 환경과 적절한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있어 정보접근이 막혀 있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거나 손해배상소송을 벌이고 있다. 또한 정신지체인의 경우 후보자 선택에 있어 실제로 가능한 방법을 정신지체인 부모들은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참정권 실현은 선거권이 평등하게 실현되어야 가능하다. 모든 국민이 누리는 참정권을 장애인들에게는 공평하게 그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선거권은 사회완전참여와 평등이 실현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다.

7. 결과적으로 평등한 사회가 되려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각종 인권분야 중에 최후의 보루는 장애인 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은 연령, 성별, 시대별 그리고 지역을 가리지 않고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의 인권지수가 곧 그 사회의 인권의 정도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한다.

장애인의 인권지침은 “완전참여와 평등”이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제여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의 완전참여와 평등이 가능하려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회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국민은 많은 부분을 정부에 위임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은 국가에 납세, 국방, 교육 등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정부는 소외계층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장애인에 관한 모든 정책을 세움에 있어 사회통합이 가능하도록 시행해